^{1편} 학교법인

학교법인 횃불학원 정관

학교법인횃불학원 정관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기본이념과 진리, 자유, 사랑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초교파적인 위치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며 국가 및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학교법인 횃불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제3조(설치학교)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치·경영한다.
- **제4조(주소)**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1길,70(양재동)에 둔다.〈개 정 2016.3.1.〉
- **제5조(정관의 변경)**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⟨개정 2012.8.10.⟩
 -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2.8.10.〉

제 2 장 자산과 회계

제 1 절 자 산

- **제6조(자산의 구분)**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-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 - ③ 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**제7조(재산의 관리)** ①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

1-1 정관

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8조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 절 회 계

- **제9조(회계의 구분)**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 -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,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,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,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로 확정하고, 이사장이 집행한다.〈개정2006.10.17〉
- **제10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**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회계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,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제12조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 3 절 예산·결산 자문위원회〈삭제 2006.10.10.〉

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

제 3 장 기 관

제 1 절 임 원

제1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 9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 〈개정 2004.9.24.〉
- 2. 감사 2인

제18조의2(상근임원) ① 제18조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

- 1. 이사장
- 2. 상임이사
-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9.1]

- **제19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.
 - 1. 이사 4년
 - 2. 감사 2년
 - ② 삭제 〈2012.8.10.〉
- 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, 나이, 임기,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10.17.>
 -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05.8.30.〉
 -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-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,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 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20조의2(개방이사의 선임)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8.3.18.〉
 -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 -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
 - ④ 삭제 〈2008.3.18.〉

[본조신설 2006.10.17]

- 제20조의3(개방이사의 자격)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안수집사 이상의 기독교신자로서 학교법인 횃불학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. [본조신설 2006.10.17]
- **제20조의4(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)** ① 제20조의2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 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
-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법인 2인
 - 2. 대학평의원회 3인
-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④ 개방이사의 추천방법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8.3.18.]

- 제21조(임원 선임의 제한)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 -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〈개정 2006.10.17.〉
 -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 〈개정 2003.3.21.〉
 -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- ⑤ 삭제 〈2006.10.17.〉
 -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.〈신설 2006.10.17.〉〈개정 2008.3.18.〉
 - ⑦ 제6항의 감사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20조의2(개방이사의 선임), 제20조의3(개방이사의 자격)를 준용한다.〈신설 2006.10.17.〉
- 제2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)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.〈개정 2005.8.30.〉
 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.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 할수 없다.<개정 2006.10.17, 2012.8.10.〉
- 제2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**제24조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)**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25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26조(임원의 겸직금지)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
 - ② 감사는 이사장, 이사, 학교법인의 교직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2 절 이사회

제27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)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 - 1. 학교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-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- 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〈개정 2020.3.1.〉
 - 6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 -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**제28조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〈개정 2006.10.17.〉

-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개정 2006.10.17.〉
-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〈신설 2012.8.10.〉
- **제29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.
 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30조의2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8.10, 2021.9.1.〉
 -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〈신설 2012.8.10.〉 [본조신설 2006.10.17.]
- 제31조(이사회 소집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〈개정 2006.10.17.〉
 - 2.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〈개정 2006.10.17.〉

제 4 장 해 산

- 제32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08.9.8.〉
- 제3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.

〈개정 2008.9.8.〉

제34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<개 정 2012.8.10.>

제 5 장 교 원

제 1 절 교 원

제 1 관 임 명

제35조(임용)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임용한다.(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중임할 수 있다.)

〈개정 2006.10.17., 2008.3.18., 2020.3.1.〉

- ② 총장이외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 〈개정 2003.3.21, 2012.8.10.〉
 - 1. 근무기간
 - 가. 교 수 : 정년까지.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〈개정 2012.8.10, 2013.2.15.〉

나. 부 교 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
다. 조 교 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
라. 삭제 〈2012.8.10.〉

2. 급여

정관 제41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

- 3. 근무조건
 - 교수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
- 4. 업적 및 성과
 -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
- 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- 6. 제1호 내지 제5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. 〈신설 2003.3.21.〉
- ④ 삭제 〈2012.08.10.〉
- ⑤ 조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. 〈개정 2003.3.21.〉
- ⑥ 부총장 및 실·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. 〈개정 2003.3.21., 2008.9.8.〉
- ⑦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〈개정 2003.3.21, 2012.8.10.〉
- ⑧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3.3.21 2012.8.10.〉
- ⑨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(이하 이 정관에서 말하는 교원은 대학교육기관 강사를 제외한다) 〈신설 2020.3.1.〉

제 2 관 신분보장

- 제36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7.2.9.〉
 -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.) 〈개정 2012.8.10., 2017.2.9.〉
 - 2.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
- 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,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- 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- 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〈개정 2013.2.15.〉
- 6. 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. 연구기관 ,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〈개정 2013.2.15.〉
- 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
〈개정 2006.10.17., 2008.3.18, 2012.8.10., 2017.2.9.〉

- 7의2.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하는 경우 〈신설 2017.2.9.〉
- 8.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〈개정 2013.2.15.〉
- 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〈신설 2013.2.15.〉
- 10.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〈신설 2013.2.15.〉 **제37조(휴직의 기간)**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 - 1. 제3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.
 - 2.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 - 3.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.
 - 4. 제3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 - 5. 제3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 - 6. 제3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. 또한, 여성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제36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한다.

〈개정 2006.10.17., 2008.3.18, 2017.2.9.〉

- 7. 제3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8. 제3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

초과할 수 없다<신설 2013.2.15.>

9. 제3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.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〈신설 2013.2.15.〉

제38조(휴직교원의 신분) 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-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제3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.
- 제39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 제36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
 - ② 제36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〈개정 2013.2.15.〉

제40조(직위해제 및 해임) ①삭제〈2017.2.9.〉

-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 가 심히 불성실한 자.
 - 2.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〈개정2017.2.9.〉
 - 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 〈신설 2017.2.9.〉
 - 4. 금품비위,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·경찰 등 수시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〈신설 2017.2.9.〉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-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.<개정 2017.2.9.
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- ⑦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,제3호 또는 제4항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2.9.>
- ⑧ 삭제 〈2017.2.9.〉
- 제40조의2(당연 퇴직의 사유) 교원이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 다만,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제5호는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"공무원"은 "교원"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7.2.9.]

- 제40조의3(면직의 사유)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 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.
 - 1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 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 - 2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 - 3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 - 4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 - 5.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·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
 -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2.9.]

- 제40조의4(의원면직의 제한)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"중징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
 - 2.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
 - 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 - 4.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

-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 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·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7.2.9.]
- **제41조(보수)**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2조(의사에 반한 휴직, 면직 등의 금지) ① 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 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급·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교원의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 -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을 청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2.8.7.)
- 제43조(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)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 지 못한다.
- 제43조의2(명예퇴직) ① 본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8.10.]

제44조(교원정년)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퇴직한다. 단, 총장은 예외로 한다. 〈개정 2003.3.21, 2004.9.24, 2020.3.1. 2021.9.1.〉

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

- 제45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 교원(총장을 제외한다)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06.10.17.〉
- 제46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강사, 겸임 및 초빙교수를 임용 제청하

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12.8.10., 2020.3.1.〉

- 2. 삭제 〈2008.09.08.〉
- 3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4.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사항 〈신설 2003.3.21.〉
- ② 인사위원회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 - 2.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 - 3.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- 제47조(인사위원회 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.
 -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제48조(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)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〈개정 2016.3.1.〉

-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9조(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50조(회의록 작성)**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**제51조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**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**제52조(운영세칙)**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

제53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, 5인의 위원으로 조직

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
-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, 법인의 이사,「사립학교법」제6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,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- **제53조의2(외부위원의 임기 등)**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②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5. 제62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(본조신설 2017.2.9.)
- **제54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)**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-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회무를 대행한다.
- 제55조(징계의결의 기간)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**제56조(제척사유)**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 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**제57조(위원의 기피 등)**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

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**제58조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**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59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 -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〈개정 2017.2.9.〉
- **제60조(징계의결)**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 -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2.9.〉
 -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2.9.>
 -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60조의2(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) ①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2.9.]

- **제60조의3(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)**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.
 - ②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

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2.9.]

- **제61조(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)**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 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제62조(징계사유의 시효)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,「교육공무원법」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.

〈개정 2012.8.10., 2017.2.9.〉

- ② 제60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이나 검찰.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 〈신설 2017.2.9.〉
-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·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〈신설 2017.2.9.〉
- **제62조의2(비밀누설의 금지)**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7.2.9.]

- **제63조(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**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- **제64조(운영세칙)**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절 사무직원

제65조(자격) ① 직원은 사무직원(이하 "일반직원"이라 한다) 및 계약직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.<개정 2018.3.1.〉
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.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자격증, 면허증,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3.1.〉
-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40조의2(당연 퇴직의 사유)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"공무원"은 "일반직원"으로 본다. 〈개정 2017.2.9.〉
- **제66조(임용)**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, 승진, 승급, 전직, 전보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해임 및 파면(이하 "임용"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, 전형 또는 근무성적,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,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- **제67조(복무)**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에 준용한다.
- 제68조(보수)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- **제69조(신분보장 및 정년)**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에 준용한다.
 - ②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. 단,부총장은 예외로 한다. 〈개정 2018.3.1.〉

- ③ 정년에 달하는 자는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에 퇴직한다.
- **제70조(징계 및 재심청구)**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 준용한다. 다만,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
 -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,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6 장 직 제

제 1 절 법 인

- 제71조(법인사무조직) ① 법인에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, 국장을 둘 수 있다.〈개정 2018.3.1.〉
 -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, 과장을 둘 수 있다.〈개정 2018.3.1.〉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 절 대 학 교

- 제72조(총장)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.
 -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 - ③ 대학교는 3명 이내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교수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〈개정 2008.9.8., 2013.2.15.,2022.11.10〉
 -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 순위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〈신설 2008.9.8.〉、〈개정 2013.2.15.,2022.11.10〉
- **제73조(하부조직)** ① 대학교에, 교학처, 사무처, 학생처, 교목실, 기획발전실을 둔다. 〈개정 2008.9.8., 2013.2.15.,2017.2.9.〉
 - ② 각 처(실)에는 처(실)장을 두며, 각 처(실)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〈개정 2008.9.8, 2013.2.15, 2017.2.9.〉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처·실 및 그 하부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3.2.15, 2017.2.9.〉
 - ④ 삭제 〈2017.2.9.〉

- ⑤ 삭제 〈2017.2.9.〉
- ⑥ 삭제 〈2017.2.9.〉
- ⑦ 삭제 〈2017.2.9.〉
- ⑧ 삭제 〈2017.2.9.〉
- 제74조(부속시설)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둔다.
 -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,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3.1.〉
 -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-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, 부서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,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.

제 3 절 정 원

제74조의2(정원)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[별표 제1호], [별표 제2호]와 같다. 〈신설 2018.6.22.〉

제 7 장 대학평의원회〈신설 2006.10.17.〉

제75조(대학평의회의 설치)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 회(이하 평의원회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[본조신설 2006.10.17.]

- 제76조(평의원회의 구성) ① 평의원회는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21.9.1.〉
 - 1. 교원 4명
 - 2. 직원 3명
 - 3. 학생 1명
 - 4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
 - 5. 조교 1명

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06.10.17.]

- 제77조(교내평의원의 위촉)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21.9.1.〉
 - 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 - 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 - 3.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 - 4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위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 - 5.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
[본조신설 2006.10.17.]

- 제78조(평의원회 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.
 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[본조신설 2006.10.17.]

- **제79조(평의원의 임기)**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06.10.17.]

- 제80조(평의원회의 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. 〈개정 2021.9.1.〉
 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5.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 - 6. 대학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06.10.17.]
- 제81조(운영규정)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6.10.17.]

- **제82조(공고)**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일보에 공고한다.〈조변경 2006.10.17.〉
- 제83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〈조변경 2006.10.17.〉
- 제84조(설립당초의 임원)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〈조변경 2006.10.17.〉

설립 당초의 임원 명부

-	직 명	성 명	연령 (세)	주민등록번호	임기 (년)	주 소	
1	이사장	이형자	52	440309-****	4	서울 용산구 한남동 11-260(2/5)	
2	이 사	최순영	57	391102-****	4	서울 용산구 한남동 11-260(2/5)	
3	и	김장환	62	340725-****	4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73-6 중앙초등학교 관사	
4	и	김상복	57	390111-****	4	서울 서초구 양재동 57 신동아빌라 C-5	
5	и	박성수	54	420814-****	4	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-3 개나리APT 35-101호	
6	и	윤남중	67	290130-****	2	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-1(21/4) 경남APT 2동 201호	
7	и	이수영	50	461009-****	2	서울 강동구 상일동 152 벽산빌라 2-101 (40/8)	
8	и	송용필	58	380225-****	2	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럭키A 103-402	
9	и	권성수	45	510502-****	2	서울 동작구 사당 5동 224-78(10/8)	
10	и	전재옥	58	381031-****	2	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22 다락방전도협회 2F 이슬람연구소	
11	감 사	김광평	62	341111-****	2	서울 서초구 양재동 58-2 신동아빌라 B지구 1-1	
12	и	김용철	37	590330-****	1	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4번지 아남A 101-50 6호	

제 9 장 청렴의무 등〈신설 2022.11.10.〉

제85조(청렴의무) ① 이사장,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22.11.10.]

- **제86조(사학기관 행동강령)** ① 이사장,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8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.11.10.]

부 칙

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교원정년에 관한 경과조치)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년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5조 [별표 제2호]는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임원 선임기간의 예외)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.
- ③(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

1-1 정관

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보며, 임용기간은 당초 임용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무 직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〈개정 2023.11.10〉

법인 직원 정원

직 종	정 원
총계	4
일 반 직	3
계 약 직	1

〈별표 2〉 〈개정 2018.3.1., 2023.11.10〉

대학교 직원 정원

직 종	정 원
총 계	30
일 반 직	20
계 약 직	10

〈별지〉

재 산 목 록

구분	소 재 지	m	평수	시 가	소 유 주	대 표
교지	서울 서초구 양재동 55번지	3,305.8	1,000	7,206,644,000	학교법인 횃불학원	이형자
교사	ű	7,698.74	2,328	9,059,838,000	и	и